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29
----------	------

발의연월일 : 2017. 2. 22.

발의자 : 전혜숙 · 안규백 · 황주홍

이찬열 · 송옥주 · 조정식

변재일 · 박남춘 · 정재호

김영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당장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내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의 결혼이민자와 제2항의 재 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